
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4.

발 의 자 : 김선교·김상훈·김위상
김성원·최은석·정동만
구자근·최보윤·박덕흠
김은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, 융자, 이자차액보전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받은 귀농어·귀촌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지원금 환수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절차적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 또한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귀농·귀촌인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지원금 환수 처분 전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의무

화하여 환수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고, 재해·신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귀농어·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 등).
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환수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3(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재해, 신병(身病)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환수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의2(지원금의 환수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1조의2(지원금의 환수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환수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u>
<u>② (생 략)</u> <u><신 설></u>	<u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 <u>제21조의3(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재해, 신병(身病)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환수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u>